

(뒤쪽)

유 의 사 항

기능교육용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여야 한다.
2.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3.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야 한다.
4. 기능교육용 자동차(기능검정용 자동차를 포함한다)의 종별 기준은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.

기능교육용 자동차
확 인 증

시·도경찰청장

☐ 제원

형식승인번호

길 이

너 비

높 이

차 량
총중량

배기량

정 격
출 격

승 차
정 원

최 대
적재량

기통수

연료의
종 류

비 고

☐ 사용유효기간

연월일부터

연월일까지

검사소

검 사
주 임
확 인